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“보조금”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, 부담금,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7조 및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등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(지자체장인 경우 3개월) 내에 제출하고,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.

「하수도법」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(이하 “타행위”라 한다)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「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」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 보

조액의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,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지출액 산정은 지자체의 예산 반영액 대로 산정하되, 그 반영액이 예산 지원 시 확정된 원인자부담금보다 적을 때에는 예산 지원 시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며, 예산 편성 당시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나 정산결과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만큼 국고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.

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는 총사업비 177,689백만원의 “○○○○하수처리시설(Q=100,000m³/일) 설치사업”을 민간투자사업(BTO)으로 2013. 2. 27. 착공, 2016. 2. 26. 준공하여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민간투자사업자인 ○○○○○○(주)에서 운영하고 있다.

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는 2016. 5. 24. 총 사업비 177,950백만원¹⁾ 중 정산지출액 177,689백만원에 대하여 국고 16,815백만원, 지방비 151,492백만원(민간투자비 141,534백만원 포함), 원인자부담금 9,38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‘○○○○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(BTO) 사업추진 실적보고서(정산서)’를 ○○○○○○○○청 ○○○○○○○과로 제출하였다.

○○○○○○○○청 ○○○○○○○과는 2016. 11. 30. 위 정산서를 검토하여 아래 [표1]과 같이 국고 16,815백만원을 확정(원인자부담금 9,383백만원, 지방비 별도 정산)하고 716백만원(이자 별도)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결정·통보하였으며,

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는 2016. 12. 19. ○○○○○○○청으로부터 통보받

1) 총사업비 177,950백만원 중 국고 17,531백만원, 지방비 151,036백만원(시비 9,502백만원, 민간투자비 141,534백만원), 원인자부담금 9,383백만원으로 구성

은 국고보조금 716백만원(이자 별도)을 반납하였다.

[표1] 국고보조금 정산 신청 및 확정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계	국고	지방비	원인자부담금
정산 신청	177,690	16,815	151,492	9,383
정산 확정	177,529	16,815	별도정산	9,383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국고보조금 정산 신청서에 따르면 ○○ ○○, ○○ ○○, ○○, ○○지구, ○○○○도시 등 5개 개발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9,383백만원으로 적용하였으나, 정부합동감사 시 ‘○○○○하수처리구역’ 내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[표2]와 같이 정산 신청서 제출 시 반영된 5개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15,212백만원으로 정산 신청서 보다 5,829백만원 많았다.

또한 정산서 제출 시 반영된 5개의 개발사업 외에 ‘○○○○하수처리구역’ 내의 타 행위를 검토한 결과 아래 [표2]와 같이 ○○산단, ○○ 0차 산단, ○○ 지구, ○○ 0차 산단, ○○ 0차 산단 등 5개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5,825백만원을 부과하였다.

[표2]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현황

(단위 : 원)

개발사업명	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				
	부과일	부과금액	납부일	납부금액	비고
○○ ○○지구	2014-06-30	851,178,660	2014-07-01	851,178,660	1차분
	2017-08-08	851,178,660	2017-08-22	851,178,660	2차분
	2017-10-23	851,178,680	2017-10-30	851,178,680	3차분
	소계	2,553,536,000		2,553,536,000	완납
○○지구	2010-06-09	944,384,000	준공전 납부		미준공
○○ ○○지구	2016-01-25	1,140,000,000	2016-03-02	1,140,000,000	1차분

	소계	2,848,384,000		1,708,384,000	미납
○○지구	2013-07-09	57,197,450	2013-07-09	57,197,450	1차분
	2014-01-24	7,619,980	2014-01-24	7,619,980	2차분
	2016-06-23	643,566,780	2016-06-23	643,566,780	3차분
	소계	1,143,948,880		435,567,670	미납
○○ 혁신도시	2012-04-23	3,900,000,000	2012-04-27	3,900,000,000	1차분
		3,900,000,000	2012-12-27	3,900,000,000	2차분
	2017-12-28	-77,483,760	2017-12-28	-77,483,760	기존 이수량 환급
	소계	7,722,516,240		7,722,516,240	완납
정산 반영 사업 소계		15,212,769,120		12,124,436,450	
○○산단	2017-03-14	1,879,509,120	2017-06-30	1,879,509,120	(일시)완납
○○ 0차 산단	2013-06-12	1,393,303,680	2014-11-28	1,393,303,680	(일시)완납
○○지구	2013-05-30	507,362,000	2013-06-04	507,362,000	1차분
	2013-10-24	507,362,000	2013-10-30	507,362,000	2차분
	2013-11-29	230,276,000	2013-12-23	230,276,000	3차분
	2013-11-19	277,084,720	2014-09-19	277,084,720	4차분
	소계	1,522,084,720		1,522,084,720	완납
○○ 0차 산단	2014-10-10	279,256,960	2014-10-21	279,256,960	(일시)완납
○○ 0차 산단	2014-10-10	750,676,480	2014-10-21	750,676,480	(일시)완납
정산 누락 사업 소계		5,824,830,960		5,824,830,960	
합계		21,037,600,080		17,949,267,410	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‘○○○○하수처리구역’에 부과한 타 행위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‘○○○○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(BTO) 사업추진 실적보고서(정산서)’의 원인자부담금 9,383백만원보다 11,655백만원 더 많은 21,038백만원을 부과하였다.

따라서 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는 ‘○○○○하수처리구역’에 부과한 타 행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,038백만원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결과, 아래 [표 3]과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금액이 15,649백만원으로,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7,531백만원에서 확정금액을 제외하면 1,882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9,383백만원으로 11,655백만원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확정금액을 16,815백만원으로 1,166백만원을 과다하게 확정하여,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1,882백만원보다 1,166백만원이 적은 716백만원만 2016. 12. 19. 국고로 반환하였다.

[표3] 국고보조금 재산정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계	국고	지방비	원인자 부담금	
정산 신청	177,690	16,815	151,492	9,383	
정산 확정	177,529	16,815 (10%)	별도정산	9,383	보조율 : $16,815 \div (177,529 - 9,383) = 10\%$
감사시 재산정	177,529	15,649 (10%)	별도정산	21,038	국고보조금 재산정 : $(177,529 - 21,038) \times 10\% = 15,649$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시정] “○○○○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”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일부를 미반영하여 과다하게 정산 확정된 국고보조금 1,166백만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